

집합투자기구 공모주식 배정 기준

2005.03.24 제정
2005.09.30 개정
2007.09.11 개정
2009.02.04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① 이 기준은 회사의 집합투자기구에 회사명의 또는 기타 통합계좌명으로 공모주식을 청약하고 그 결과를 배분함에 있어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공모주청약을 한 경우 주권증권사의 배정 수량대로 배분 한다.

제2장 공모주식 청약 및 배정

제2조(공모주식 수요예측 참여) ① 공모주식의 수요예측 참여 여부는 주식운용본부장 또는 주식운용팀장(이하 본부장)이 관련 법규와 당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규약, 정관, 투자설명서 및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
② 공모주식의 수요예측 참여 가격은 본부장이 결정한다.

③ 공모주식의 수요예측 신청 수량은 각 집합투자기구별 순자산 총액의 10%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부장이 결정한다. 다만, 각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의 크기, 주식편입가능비율, 운용방향이나 전략 및 주권증권사의 배정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다.

제3조(공모주식 청약의 사전 확정 및 배정) ① 본부장은 공모주식의 청약에 응할 집합투자기구 및 주식수를 당해 공모주식의 청약 이전에 확정, 내부 품의한 후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청약 하며, 관련 자료를 보관 하여야 한다.

② 회사의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공모주식 청약 주식수는 수요예측 참가 결과 배정 받은 당사의 청약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각 집합투자기구별 공모주식 청약 주식수는 배정 받은 주식수를 사전신청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변경하여 안분할 수 있다.

제4조(공모주식 청약내역의 통보) 주식운용 담당팀장은 공모주식을 청약한 당일 집합투자기구별 공모주식 청약내역을 컴플라이언스 담당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시)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종전 간접투자기구 공모주식 배정 기준에 의해 결정된 사항들은 이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.